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1. 29 선고 2022가단109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1. 2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B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74,335,4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74,33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채무자 C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D의료재단, E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들(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고 한다)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바, 위 각 사무장병원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 C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위 편취금을 각 사무장병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소위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채무자 C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19)되었으나, 2024. 7. 17. 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¹⁾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학승

별지

1) 검사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4노411), 2024. 11.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